

노동건강정책포럼

2023년 7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1일 (금) 오후 6시-8시

* 비대면(ZOOM)

주제 사내하청의 산재 예방 실태와 개선 과제

사회 김현주(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발제1 - 강은희 변호사

하청업체 산재 사망 사례와 도급인의 산재예방의무에 관한
현행 법률 분석 - 중대재해 기소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2 - 하인혜 안전관리자

대기업 하청업체 안전관리 실태 - 석유화학 대공장을 중심으로

지정토론

1. 이태성(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2. 정동석(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3. 박종식(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ZOOM 링크 (온라인 회의) bit.ly/45iiRf6

하청업체 산재 사망 사례와 도급인의 산재예방의무에 관한 현행 법률 분석 - 중대재해 기소 사례를 중심으로

강은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2. 관련 동향
3. 기소 사례 분석
4. 판례
5. 불기소 사례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4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및 위 제3호에서 정한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피해방지 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9.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종사자를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안전보건 업무가 '종사자'를 보호하는지 평가하여야 함 (= / 산안법의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능력 자체를 평가하여야 함(충분한 예산과 인력 투입만으로 부족)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법령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

- ① 법 제4조제1항제4전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관련 동향

2022. 12월말 산업재해 현황(고용노동부)

- 사망만인율: 1.10‰(전년 동기 대비 0.03‰p 증가)
 - 사고사망만인율: 0.43‰(전년 동기 대비 동일)
 - 질병사망만인율: 0.67‰(전년 동기 대비 0.02‰p 증가)
- 사망자수: 2,223명(전년 동기 대비 143명(6.9%) 증가)
 - 사고사망자수: 874명(전년 동기 대비 46명(5.6%) 증가)
 - 질병사망자수: 1,349명(전년 동기 대비 97명(7.7%) 증가)

2023. 6월말 산업재해 현황(고용노동부)

- 사망만인율: 0.47‰(전년 동기 대비 0.11‰p 감소)
 - 사고사망만인율: 0.19‰(전년 동기 대비 0.04‰p 감소)
 - 질병사망만인율: 0.28‰(전년 동기 대비 0.07‰p 감소)
- 사망자수: 976명(전년 동기 대비 166명(14.5%) 감소)
 - 사고사망자수: 392명(전년 동기 대비 54명(12.1%) 감소)
 - 질병사망자수: 584명(전년 동기 대비 112명(16.1%) 감소)

2023. 6월말 산업재해 현황

- 규모
 - 감소: 5인 미만(-62명), 100인~299인(-11명), 300인~999인(-13명)
 - 증가: 5인~49인(+22명), 50인~99인(+8명), 1,000인 이상(+2명)
- 재해유형
 - 떨어짐(151명, 38.5%), 교통사고(41명, 10.5%), 부딪힘(40명, 10.2%),끼임(35명, 8.9%), 물체에맞음(31명, 7.9%) 순
 - 감소: 떨어짐(-18명), 화재·폭발·파열(-10명), 부딪힘(-8명), 교통사고(-5명),무너짐(-3명), 끼임(-2명), 깔림·뒤집힘(-1명), 무리한 동작(-1명)
 - 증가: 물체에맞음(+4명)
 - 동일: 넘어짐, 절단·베임·찢림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28명(124건)으로
전년 동기 147명(133건) 대비 **19명(12.9%), 9건(6.8%) 감소**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현황

구분	사고 사망자(명)	조사 대상 사망 재해(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건)	송치	내사 종결	기소	불기소
'22	874	611	230	34	18	11	1
'23 1분기	201	124	48	미확인	미확인	10	2
합계	1075	735	278	미확인	미확인	21	3

- 2022. 12. 31. 기준 사건처리율 노동부 22.7%, 검찰 5.2%
-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230건 중 14.8%(34건) 송치, 4.8%(11건) 기소(2023. 1. 기준)(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278건 중 7.5%(21건) 기소)
- 3건의 불기소 처분(2023. 8. 22. 기준, 노동부의 기소 의견 송치, 언론 보도자료)
- 노동청 송치기간 평균 132일, 검찰처분기간 평균 237일(2022. 12. 31. 기준, 태평양)

규모별 사건 송치 현황

- (규모별) 전체 송치사건의 절반(50.0%)이 300명 미만의 중·소 규모 기업, 1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사건

【규모별 사건송치 현황】

(단위: 건, %)

제조·기타					건설업												
계	50~100인	100~300인	300~1,000인	1,000인~	계	50~120억	120~800억	800억~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	100	4	20.0	5	25.0	6	30.0	5	25.0	14	100	8	57.1	5	35.7	1	7.1

법적 쟁점

1. 경영책임자 정의를 둘러싼 논란
 - 대표이사(CEO)/ 안전경영책임자(CSO)
 - 회장/ 대표이사(삼표그룹 회장의 기소, CEO 제외)
 - 복수의 대표이사(COO 대표이사 1인 송치, CEO 대표이사 제외)
2.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논란
 -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모호하여 위헌 주장

정책 방향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전략1]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

*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

→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

○ [전략2]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

□ 아울러, 지속적인 중대재해 감축 기반 구축을 위해,

○ [전략3]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 [전략4]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추진

정부 및 국회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동향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운영(아직 발표된 내용은 없음, 6월말 종료 예정이었음)
-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운영(아직 발표된 내용은 없음, 워크숍이 진행되었음)
- 국민의 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원 포인트 법안 발의

기소 사례 20건(6월 14일 기준)

판결 5건(8월 25일 기준)

기소 사례 분석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1. 두성 산업	2. LDS 산업개발	3. 삼강에스앤씨
사고 유형	급성중독	추락사	추락사
사고 내용	22. 2. 16. 유해물질(트피클로로메탄)에 노출된 작업자 10명 독성 간염 발병	22. 3. 29. 공장 신축공사 현장 작업대에서 1명 추락사	22. 2. 19. 선박수리 도크에서 난간 보수작업 중 1명 추락사
재해자 소속	두성산업(A회사) 상시 근로자 250명(재해 근로자 10명), B회사 상시 근로자 48명(재해 근로자 6명)	하도급 AO중공업 근로자 1명	하도급 주식회사 다OO 근로자 1명
피고인(중처법)	두성산업 대표이사	(시공사/도급) LDS 산업개발 대표이사	(시공사/도급)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사건 진행	22. 6. 27. 기소	22. 10. 19. 기소	22. 11. 03. 기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4. 한국제강	5. 건물건설	6. 온유파트너스
사고 유형	중량물 낙하 협착	철근 낙하 머리 충격	추락사
사고 내용	22. 3. 16. 철강공장에서 방열판 낙하로 방열판이 다리 사이에 협착 심형설 쇼크로 1명 사망	22. 3. 9.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철근 낙하 머리 충격, 1명 사망	22. 5. 14.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인양작업 중 1명 추락사
재해자 소속	(도급) 강백산업(개인사업자) 근로자 1명	(하도급) 주식회사 A 근로자 1명	(하도급) 아이코닉에이씨 근로자 1명
피고인(중처법)	한국제강 대표이사	(시공사/도급) 건물건설 대표이사	(시공사/도급)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사건 진행	1심 선고(23. 4. 26., 판결2) 2심 선고(항소 기각)	22. 11. 30. 기소	1심 확정(23. 4. 6. 선고, 판결1)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7. 엠택	8. 시너지건설	9. 만덕건설
사고 유형	기계 협착	충격 전도 머리 부딪힘	굴착기 협착
사고 내용	22. 7. 15. 14.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주조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머리 협착, 1명 사망	22. 3. 16.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제파이프에 충격, 전도 머리 부딪혀, 1명 사망	22. 5. 19.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선회하던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머리 협착, 1명 사망
재해자 소속	주식회사 엠택 근로자 1명	(재재재하도급) 원진이앤지 근로자 1명	(하도급) 주식회사 A 근로자 1명
피고인(중처법)	엠택 대표이사	(시공사/도급) 시너지건설 대표이사	(시공사/도급) 만덕건설 대표이사
사건 진행	22. 12. 27. 기소	1심 선고(23. 6. 23. 판결3/ 항소)	1심 선고(23. 8. 25. 판결4)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10. 태성종합건설	11. 제동종합건설	12. 평화오일셀 공업
사고 유형	추락사	구조물 낙하 충격	공구 머리 충격
사고 내용	22. 2. 26. 춘천교육지원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체 철거 작업 중 비계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 1명 사망	22. 2. 23. 기숙사 해체공사 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1명 사망	22. 2. 9.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압축성형기에서 튕겨나온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를 부딪혀 3. 10. 사망
재해자 소속	(도급) 태성종합건설 근로자 1명	(하도급) 근로자 1명	(하청) 근로자 1명
피고인(중처법)	(시공사, 도급) 태성종합건설 대표이사	(시공사, 도급) 제동종합건설 대표이사	(원청) 대표이사
사건 진행	22. 12. 29. 기소	22. 12. 30. 기소	23. 2. 14. 기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13. 홍성건설 '블루핀'	14. 삼표산업	15. 신성산업
사고 유형	굴착기 깔림	토사붕괴 매몰	협착 사망
사고 내용	22. 6. 8. 성주군 가천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상수도 배수관로 되메우기 작업 중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1명 사망	22. 1. 29. 석분토야적장에서 토석채취를 위한 천공 작업 중 대규모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	22. 5. 26. 사출성형기의 금형 사이에 협착되어 1명 사망
재해자 소속	(하도급) 근로자 1명	삼표산업 근로자 2명, 굴착기 지입차주(특수고용) 근로자 1명	신성산업 근로자 1명
피고인(중처법)	(시공사, 도급) 홍성건설 대표이사	그룹 회장(대표이사는 산안법위반, 업과사)	신성산업 대표이사
사건 진행	23. 3. 17. 기소	23. 3. 31. 기소	23. 5. 4. 기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16. A종합건설 주식회사	17. 현대건설 자회사 현대스틸산업	18. A주식회사(서초동 복합시설)
사고 유형	협착 사망	협착 사망	추락사
사고 내용	22. 3. 25. 주차 타워 단열재 작업 중 리프트에 협착되어 1명 사망	22. 4. 20. 지게차로 파이프 이적 작업 중 파이프가 굴러내려 협착되어 1명 사망	22. 3. 25. 복합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 중 환기구 안쪽으로 떨어져 1명 사망
재해자 소속	(하도급) B산업 주식회사 근로자 1명	(도급) G사 근로자 1명	(시공사/도급) A주식회사 근로자 1명
피고인(중처법)	(시공사/도급) A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	(시공사/도급) A주식회사 대표이사
사건 진행	23. 5. 8. 기소	23. 5. 22. 기소	23. 6. 2. 기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19. 충북 보은군 소재 주식회사A	20. 공동주택 관리 회사 A	21. 대구 철강가공품 제조 회사 A
사고 유형	협착 사망	추락사	철판에 허벅지 베여 사망
사고 내용	22. 2. 24. 천정크레인 탈사 설비 조립작업 중 탈사기가 하강하여 협착되어 1명 사망	22. 4. 15.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천정 누수 확인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1명 사망	22. 9. 15. 철강 제품 생산 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던 노동자가 초속 3.6m로 자동 투입되는 철판 위를 넘어가다가 철판에 허벅지를 베여 사망
재해자 소속	(도급) B회사 개인사업자 근로자 1명	공동주택 관리회사 A 근로자 1명	철강가공품 제조회사 A 근로자 1명
피고인(중처법)	주식회사 A 대표이사	공동주택 관리회사 A 대표이사	제조회사 A 대표이사
사건 진행	23. 6. 5. 기소	23. 6. 14. 기소	23. 7. 27. 기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S22. C 계열사(SPL)		
사고 유형	끼임 사망		
사고 내용	22. 10. 15. SPL 평택공장 냉장샌드위치 라인 소스배합실에서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거꾸로 끼여 사망		
재해자 소속	SPL 근로자 2명		
피고인(중처법)	SPL 대표이사		
사건 진행	23. 8. 25. 기소		

- 기소된 사례 중 하청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 포섭되는 사례가 없었음(50인 미만 또는 건설 도급액 50억 원 미만)
- *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고 하청은 아닌 경우 원청에게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 **기소된 사례에서는 모두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고, 기소함 (재재재 하도급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 최근 불기소된 에쓰오일 대표이사 사례를 제외하고,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안전경영책임자(CSO)를 별도로 두어도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함
- *7. 엠택, 14. 삼표산업(회장 기소)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개념(법 제2조 제7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뿐만 아니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안이 법 제4조로 포섭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 제5조는 법 제4조의 보충적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고 법 제4조에 포섭이 되지 않는 특별한 사항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인정된다면 보충적으로 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 건설공사발주사의 책임

따라서 '건설공사발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의 건설공사발주(통상 시행사)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해 도급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특정 안전보건 조치들이 '사업주(법인)'의 행위의무로 규정됨. 해당 조치를 불이행 '자(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와 '사업주(법인)'을 처벌함
 -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신분과 관련 없이 행위를 하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자를 처벌함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자연인)'에게 의무를 부여. 해당 의무의 미준수가 중대재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시 처벌되는 특이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이자 신분범
- > **수사의 시작점이 다름.**

수사의 시작점:

- **산업안전보건법:** 행위의무를 미이행한 자(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찾는 것. 법에 '경영책임자(대표자)'에게 안전보건조치 행위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음. 실무적으로는 산안법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의무위반 주체가 됨.
-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위험에 대한 인식(고의)이 존재해야 하나, 경영책임자나 원청은 쉽사리 고의가 없었다 주장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 중처법의 경우 근로자의 소속과 무관하게 사업장을 지배,관리하는 '경영책임자'에게 의무가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에서 수사가 시작됨(의무가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므로 '고의 부정'은 어려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제4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평화오일썬 공업 공소장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아니하고 등...

- 단,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사'를 원청으로 보고 기소함. 발주사 중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 이 인정된 경우가 없었음.
- 또한 지금까지 기소된 사례 모두, 하청 업체의 재해자가 원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사고가 난 경우임 (건설업, 제조업 등), 지배-관리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다툼 없이 원청 책임 인정
- 대기업의 계열사의 경우, 모기업에 책임을 묻지는 않았음
- 삼표산업의 경우에만,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 을 기소함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의 의미(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란 통상 유해·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해당 요인을 제거하는 등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지배·운영·관리’의 해석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통제할 수 있고, 경영적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①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사업주 등의 지시권이 미칠 수 있는 관리자의 파견 여부, ② 해당 장소에서 일어나는 업무 및 비상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여부(일일 또는 월간 업무보고 등), ③ 일상적 또는 비일상적 작업이나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중요 업무 결정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관여하는지 여부, ④ 해당 장소의 시설·설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⑤ 사업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1. 두성 산업	2. LDS 산업개발	3. 삼강에스앤씨
사고 유형	급성중독	추락사	추락사
위반 조항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제3호) (x) ②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 기준 마련(제5호) (x)	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제1호) (x)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제3호) (x)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 ④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등 마련(제9호) (x)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 ②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제7호) (x) ③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대한 기준 마련(제9호) (x)
재해일시	22. 2. 16.	22. 3. 29.	22. 2. 19.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4. 한국제강	5. 건륭건설	6. 온유파트너스
사고 유형	중량물 낙하 협착	철근 낙하 머리 충격	추락사
위반 조항	①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 ②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제9호) (x)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만 규정)(제3호) (x)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마련 (제5호) (x) ③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마련 (제9호) (x)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제3호) (x)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 ③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제8호) (x)
재해일시	22. 3. 16.	22. 3. 9.	22. 5. 14.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7. 엠텍	8. 시너지건설	9. 만덕건설
사고 유형	기계 협착	충격 전도 머리 부딪힘	굴착기 협착
위반 조항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제3호) (x) ②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 ③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위험요인 제거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제8호) (x)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다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지 않음. (제5조 제2호) (x)	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제1호) (x)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제3호) (x) ③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제4호) (x)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 ⑤ 중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제7호) (x) ⑥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위험요인 제거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제8호) (x)	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제1호) (x) ②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제4호) (x)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 ④ 협착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제8호) (x)
재해일시	22. 7. 14.	22. 3. 16.	22. 5. 19.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10. 태성종합건설	11. 제동종합건설	12. 평화오일빌 공업
사고 유형	추락사	구조물 낙하 충격	공구 머리 충격
위반 조항	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의 설정(제1호) (x)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 ③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제7호) (x)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구호조치,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제8호) (x)	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제1호) (x)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위험성 평가 지침 규정 기준 전혀 반영하지 못함)(제3호) (x)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주고,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제5호) (x) ④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제7호) (x) 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제8호) (x)	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제2호) (x)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제3호) (x) ③ 산안법상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배치(제6호) (x)
재해일시	22. 2. 26.	22. 2. 23.	22. 2. 9.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13. 흥성건설 '블루핀'	14. 삼표산업	15. 신성산업
사고 유형	굴착기 깔림	토사붕괴 매몰	협착 사망
위반 조항	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제2호) (x)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제3호) (x) ③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마련(제9호) (x)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제3호) (x)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하여 등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 마련(제8호) (x)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함(제5호) ②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제7호)
재해일시	22. 6. 8.	22. 1. 29.	22. 5. 26.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16. A종합건설 주식회사	17. 현대건설 자회사 현대스틸 산업	18. A주식회사(서초동 복합시설)
사고 유형	협착 사망	협착 사망	추락사
위반 조항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제3호) (x) ②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제7호) (x) ③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마련 (제9호) (x)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제3호) (x)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제3호) (x) ②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하고 관리함 (제4호) (x)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 (제5호) (x)
재해일시	22. 03. 25.	22. 04. 20.	22. 03. 25.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19. 충북 보은군 소재 주식회사A	20. 공동주택 관리 회사 A	21. 대구 철강가공품 제조회사 A
사고 유형	협착 사망	추락사	철판에 허벅지 베여 사망
위반 조항	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 인력이 총 5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40명임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아니함(제2호).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제3호) (x)	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제1호) (x)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제3호) (x)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제5호) (x) ④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제7호) (x)	
재해일시	22. 02. 25.	22. 04. 15.	22. 09. 15.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33. SPC 계열사(SPL)		
사고 유형	끼임 사망		
위반 조항			
재해 일시	22. 10. 15.		

의무 위반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목표와 경영방침) 위반 - 2, 8, 9, 10, 11, 20 (6회)
 제2호 위반(전담조직) - 12, 13, 19 (3회)
 제3호 위반(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 1, 2, 5, 6, 7, 8, 11, 12, 13, 14, 16, 17, 18, 19, 20 (15회)
 제4호 위반(인력, 예산 편성) - 8, 9, 18 (3회)
 제5호 위반(책임자 평가, 관리) - 1, 2, 3, 4, 5, 6, 7, 8, 9, 10, 11, 15, 18, 20 (14회)
 제6호 위반(안전관리자 등 배치) - 12 (1회)
 제7호 위반(의견 청취) - 3, 8, 10, 11, 15, 16, 20 (7회)
 제8호 위반(위험 매뉴얼) - 6, 7, 8, 9, 10, 11, 14 (7회)
 제9호 위반(도급 등 기준) - 2, 3, 4, 5, 13, 16 (6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1, 2호 위반(안전보건법령 준수) - 7 (1회)

의무 위반 정리 – 노동부 송치 사건 기준

송치 사건 모두 사업주가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주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내용】

(단위: 건, %)

구분	계	시행령 제4조									시행령 제5조 제1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위반건수*	126	12	4	28	15	20	5	14	17	9	2
백분율(%)	100.0	9.5	3.2	22.2	11.9	15.9	4.0	11.1	13.5	7.1	1.6

* 하나의 사안에 대해 위반조항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가 있어 송치 건수와 규정 위반 건수가 일치하지 않음

의무 위반 정리(하청근로자)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 2, 3, 4, 5, 6, 8, 9, 11, 12, 13, 16, 17, 19 (13건) / (도급 등과 직접 관련되는) 9호 이외의 조문도 적용(중사자를 넓게 규정하였기 때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목표와 경영방침) 위반 - 2, 8, 9, 11 (4회)

제2호 위반 (전담조직) - 12, 13, 19 (3회)

제3호 위반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 2, 5, 6, 8, 11, 12, 13, 16, 17, 19 (10회)

제4호 위반 (인력, 예산 편성) - 8, 9 (2회)

제5호 위반 (책임자 평가, 관리) - 2, 3, 4, 5, 6, 8, 9, 11 (8회)

제6호 위반 (안전관리자 등 배치) - 12 (1회)

제7호 위반 (의견 청취) - 3, 8, 11, 16 (4회)

제8호 위반 (위험 매뉴얼) - 6, 8, 9, 11 (4회)

제9호 위반 (도급 등 기준) - 2, 3, 4, 5, 13, 16 (6회)

판결문 분석

법원 판결

번호	6. 온유파트너스	4. 한국제강	8. 시너지건설	9. 만덕건설
선고일	23. 4. 6.	23. 4. 26.	23. 6. 23.	23. 8. 25.
법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인천지법	창원지법 마산지원
항소 여부	1심 확정(항소 포기)	2심 선고(항소 기각)	항소	미확인
유무죄 다툼 여부	X	X	X	공소사실 다툼 - 1호, 제4호 위반 - 인과관계 부인 - 고의 부인
검사 구형	원청 대표이사: 징역 2년(중처법) 원청 현장소장: 징역 8월(산안법 및 업과사) 원청 안전관리자: 벌금 500만 원(업과사) 원청 법인: 벌금 1억 6천만 원(중처법, 산안법) 하청 현장소장: 징역 1년(산안법, 업과사) 하청 법인: 벌금 1천만 원(산안법)	원청 대표이사: 징역 2년(중처법, 산안법, 업과사) 원청 법인: 1억5천만 원(중처법, 산안법)	원청 대표이사: 징역 2년(중처법)	

법원 판결

번호	6. 은유파트너스	4. 한국제강	8. 시너지건설	9. 만덕건설
원청 선고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현장소장: 징역 8월, 집유 3년 안전관리자: 벌금 500만 원 법인: 벌금 3천만 원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법인: 벌금 1억 원	대표이사: 징역 1년, 집유 3년 현장소장: 징역 6월, 집유 2년, 교육 수강 40시간 법인: 벌금 5000만 원	대표이사: 징역 1년, 집유 2년 사 회봉사 40시간 현장소장: 징역 10월, 집유 2년, 사회봉사 40시간 법인: 벌금 5000만 원
하청 선고	현장소장: 징역 8월, 집유 2년 법인: 벌금 1천만 원	대표(개인사업주): 징역 6월, 집유 2년, 사회봉사 40시간	실대표: 징역 6월, 집유 3년, 교육 수강 40시간 법인: 벌금 700만 원	현장소장: 징역 10월, 집유 2년, 사회봉사 40시간 굴착기 작업자: 금고 6개월, 집유 2년, 사회봉사 40시간 법인: 벌금 1000만 원
유리 정상	재해자의 과실 합의 및 처벌불원 재발방지 다짐 동종전과 없음	재해자의 과실 범행 자백 합의 및 처벌불원 시정명령 이행 위반사항 시정	범행 인정 합의 및 처벌불원 재발 방지 다짐 (자연인) 동종전과 없음	재해자의 과실 합의 및 처벌불원 재발 방지 다짐 중대재해 발생 전력 없음
불리 정상	법 제정 배경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의무 이행의 전적인 결여	법 제정 배경 동종 전과 및 재판 중 다시 사고 발생	법 제정 배경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법인) 동종전과	법 제정 배경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책임 자를 처벌할 필요성

시사점

1. 피고인의 변화

- 처벌의 객체가 원청과 경영책임자에게로 분명히 이동하였음.

2. 형량

- 대체로 검사의 2년 구형, 법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근처에서 형이 형성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 하한이 1년이라는 점에서, 절대 높다고 볼 수 없음 (2021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정한 산안법상 안전보건 의무위반치사죄 형량의 기본구간이 1년~2년 6개월임)

- 벌금형 또한 상한형인 5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3000만 원 ~1억 원 사이임

시사점

3. 순차적 인과관계

: 중대재해처벌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 발생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시사점

3. 순차적 인과관계

: 중대재해처벌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 발생

예) 1호 판결(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3호(유해위험요인 확인), 5호(안전보건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4호(안전보건 정책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8호(급박한 위험 발생 시 매뉴얼 마련) 위반

-> 현장에서의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 수립 누락(안전대 지급 및 부착 설비 설치 누락), 추락위험 제거 조치 또는 작업중지 미이행

-> 추락사 발생

시사점: 만덕건설

1. 감사의 주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1호 위반
-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4호 위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및 관리, 5호 위반
- 중대재해의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8호 위반

시사점: 만덕건설

2. 피고인(원청 대표이사)의 주장

가. 1호, 4호 위반 부인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다고 주장
-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고 안전시설물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유도원이 지정되어 있었다고 주장

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부정

- 다.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 부정

법원의 판단(만덕건설)

1. 시행령 제4조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매년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계획인 데 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부문에서 항상 고려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법원의 판단(만덕건설)

1. 시행령 제4조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판단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관한 것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는 데 그치거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만덕건설)

1. 시행령 제4조 제1호 위반에 대한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피고인 만덕건설의 2022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2022. 1. 5.경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위 계획에 따르면, 피고인 만덕건설의 2022년도 안전·보건 경영 목표는 “전 임직원 및 근로자 안전 생활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의식 수준 향상”이고, 이를 위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1) 안전문화 확산, 2)교육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계획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건설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며, 특히 재해의 예방,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만덕건설)

1. 시행령 제4조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판단

따라서 시행령 제4조 제1호를 이행하였다 하기 위하여는, 목표와 경영방침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가 반영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만덕건설)

2. 시행령 제4조 제4호가목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그 편성된 용도에 맞는 집행'에 대한 판단

여기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하여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말한다.

법원의 판단(만덕건설)

2. 시행령 제4조 제4호가목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그 편성된 용도에 맞는 집행'에 대한 판단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영위하는 사업인 건설업에 관하여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기준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1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만덕건설)

2. 시행령 제4조 제4호가목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그 편성된 용도에 맞는 집행'에 대한 판단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도급이나 용역 등을 매개로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보다 폭넓은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의무를 부담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편성된 예산이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사업장에서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만덕건설)

2.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목 위반에 대한 구체적 판단

경남 창원시 상수도사업소가 피고인에 도급한 공사금액 중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2,601,000원을 계상하였던 사실 및 피고인 만덕건설이 그중 일부를 안전보건을 위하여 집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법원의 판단(만덕건설)

2.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목 위반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그러나

- ① 피고인은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다.
-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반경 내 공간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류○철은 위와 같은 유도자 인건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유도원으로 이○술이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술은 차량계 건설기계에 관한 유도업무를 고정적으로 담당한 것이 아니었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간히 유도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고, 굴착기 작업반경 내 공간에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지도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재해 예방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원의 판단(만덕건설)

2. 시행령 제4조 제4호가목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그 편성된 용도에 맞는 집행'에 대한 판단

따라서,

공사 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안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편성되어야 함.

또한, 편성되어 하더라도 편성된 돈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

시사점: 만덕건설

3.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 인정

● 관련 법리 ⇨ 종래 대법원의 '인과관계' 관련 법리를 그대로 따르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특성을 가미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더라면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또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도6206 판결).

시사점: 만덕건설

3.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유도하였더라면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인력과 시설을 구비하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류○철이 유도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비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유도자가 배치되지 아니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업무상 과실 내지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런 사정은 피고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시사점: 만덕건설

3.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②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근로자가 굴착기에 충돌되거나 굴착기와 인근 담장 사이에 끼일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류○철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김○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김○도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상당수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류○철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하는 한편,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면, 위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근로자들 중 누군가는 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러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만덕건설

3.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왔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굴착기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작업반경 내 공간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였을 것이고, 만약 그러한 안전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었다면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만덕건설

3.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④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류○철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이 반영

피고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류○철의 안전·보건의식의 부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본원칙과 행동지침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3. 순차적 인과관계

: 중대재해처벌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관리책임자의 위반행위) -> 중대재해 발생

? 중대재해처벌위반 -> 대응 한계 -> 중대재해 발생 (가정적 인과관계, 부작위 인과관계, 결과회 피가능성)

시사점: 만덕건설

4.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고의 인정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①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취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다는 인식과 ②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을 것을 요함

● 이 사건의 제반 사정(컨설팅 업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뢰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무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던 중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함)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류○철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

불기소 사례 분석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1. 대흥알앤티	2. 에스오일	3. LG 하이엠 솔루션
사고 유형	급성중독	폭발 · 화재	추락사
사고 내용	2022. 2.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 장치를 방치해 근로자 13명에게 직업성질병 발병	22. 5. 19. 에스오일 온산공장의 부 탁 누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1명 사망, 9명 부상	에어컨 수리기사가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다 추락
재해자 소속	대흥알앤티 근로자 13명	(하도급) ㈜아폴로로 근로자 1명	(불기소 이유서 확보X)
불기소된 자	대흥알앤티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불기소	S-Oil 대표이사 후세이니 S-Oil 안전경영책임자(cso) A S-Oil	
기소된 자	대흥알앤티 안전보건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대흥알앤티 대표이사 산안법 기소	S-Oil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안법 위반 기소유예 S-Oil 현장 작업자, 하청(주) 아폴로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현장 작업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결정일	22. 6. 경 불기소	23. 8. 11. 울산지검 S-Oil 불기소 나머지 피고인들, 기소유예	23. 8. 27. 서울동부지검 불기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구분	1. 대흥알앤티	2. 에스오일	3. LG 하이엠솔루텍
불기소 사유	매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확인된 일부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판단. 나아가 만약 일부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에 따른 개선 결과 점검 시기(반기 1회)가 도래하기 전에 벌어진 재해이므로 유해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	대표이사 불기소 사유 : 선임된 CSO가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관리, 최종 의사 결정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피의자 대표이사가 이에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CSO 불기소 사유 : S-Oil은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절차 규정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이 존재하고 실질적 구속력이 있으며, 이번 사고는 현장에서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 : 반기 점검 의무 대상 X	수리기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고, 산안법 위반이 존재하지 않음 (예약일보다 하루 앞당겨 수리에 나서면서 고층부 작업용 차량을 동원하지 않고, 실외기를 점검함)
노동부 판단	기소 의견 송치	기소 의견 송치	기소 의견 송치

S-Oil

1. 경영책임자 정의를 둘러싼 논란

둘째, (주)삼표산업 사건에서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룹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회장을 경영책임자로 판단함.

2.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논란

NEW!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NEW! 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발생의 인과관계!

감사합니다

대기업 하청 안전 실태 -석유화학 대공장을 중심으로-



간단한 소개

- 울산 거주
- 대기업 계열사 화학공장 플랜트 배관, 철골 구조물 건설 하청업체 근무-시공, 안전 (2018.03~2022.10)
- 정유소 기계 정비 하청업체 근무-설비보전, 안전 (2022.10~2023.07)
- 산업안전기사 취득 (2023.06)
- 산업 안전 관리 전문 기관 근무 (2023.08~)
- <매일노동뉴스> 칼럼 연재중 (2022.06~)



원청사 안전관리 현황

- 울산에 소재한 대다수 석유화학공장은 대기업.
-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PSM(공정안전보고서) 상위 등급(일부 M+ 등급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S등급~P등급)
- 하지만 중견 이하 사업장의 경우 PSM M+ (보통)등급 또는 M- 등급도 존재하는 편.
- 출입 전 배치 전 검사, 특수 건강진단 시행 (원하청 모두 해당)
- 원청사 차원에서 2중, 3중 안전관리대응체계 실시 중

1) PSM 사업장 현황

[21.5월 기준]

구분	P	S	M+	M-	미부여	계
수도권	7	169	261	66	79	685
경남권	28	139	152	59	28	406
경북권	12	79	93	43	42	269
전남권	14	88	62	20	18	202
전북권	5	50	49	31	17	152
충남권	13	90	108	27	43	281
충북권	1	39	97	19	37	193
계	80 (3.8)	654 (31.4)	822 (39.4)	265 (12.7)	254 (12.7)	2,085

- PSM 대상은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관내 406개소(19.5%)
- 관내등급은 P 28개소(6.9%), S 139개소(34.2%), M+ 152개소(37.4%), M- 59개소(14.5%)임

하청사 안전관리 현황

- 원청 안전 규정을 준수할 여력이 있어야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
- 원청사가 하청사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음(공정 안전보고서의 도급업체 안전관리를 기반으로 함)
- 플랜트 건설의 경우, 저가 수주 문제가 있음. 상주 업체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외부 업체의 경우 심한 편.
- 원청 안전 규정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
- 산업안전기사 소지자 구인난
- 산재은폐 빈번

재해자는 산재신청을 했을까?



사고 영상 (S-Oil 폭발사고 2022년 5월 19일)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원인

- ‘전문 하청’은 전문 하청일까?
- 일용직 중심의 플랜트 건설 산업
- 전문성을 요구하면서 사고 위험도가 높음.
- 다단계 하청 문제
- ‘빨리빨리’와 생산 중심, 안전경시 문화의 과도기

또 다른 문제, 노후화

- 국내 첫 국가 산업 단지이므로, 대부분 설비가 노후화
- 숙련공 전반의 노쇠화 문제가 있음. 직업성 질환과 신체능력 저하 문제.

석유화학 대공장 하청업체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발제를 맡게 된 하인혜입니다.

먼저 원청사 안전관리 현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울산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은 대다수가 재벌 대기업 계열사가 많습니다. 위험물을 다루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법적 규제가 매우 많은데다, 설비 투자와 설비 개조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다른 산업군에 비해 HSE (보건, 안전, 환경) 관리 이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기에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꾸려왔습니다.

주요 사업장은 PSM,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입니다. PSM은 잠시 후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유해위험물을 법률에 명시된 기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등급수준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산재 예방 체계를 수립하여 수준에 따라 P/S/M+/M-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P등급과 S등급을 부여받은 업체는 안전보건환경 관리 수준이 높고, M+는 보통, M-는 관리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석유화학업체들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꾸준히 갱신, 보강, 점검하는 형태로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유해위험물 취급을 하고 있기에 해당 공장에 출입하여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배치 전 검사와 특수건강진단을 지정 병원을 통해 매년마다 1회에서 2회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원청사 차원에서 여러겹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사고예방을 지휘하고, 전문 안전감시 업체를 통해 현장 안전 관리 상황을 보고 받으며, 각 생산부서와 하청사마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하고, 안전관리를 매일 또는 매 분기마다 안전부서에 보고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게 만드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표면상론 우리나라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촘촘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한 PSM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유해위험 화학물 51종 중 하나라도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여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중방센터라고 부르는데, 화학물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규모나 피해 수준이 심각하기에 유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 할 필요가 있어 설치된 조직입니다. 중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12종을 작성해야 합니다. PSM 관리를 잘하는 사업장은 천장짜리 서류철을 40~50권씩 준비하여 심사를 받고, 못하는 곳이라도 최소 20권은 준비하는 편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안전기관의 집중 관리를 받고, 높을수록 자율성을 보장받는 형태입니다. 물론 최고등급인 P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한 등급에서 최하등급까지 강등당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 규정을 법 기준에 맞춰 수시로 갱신해야 합니다 현재 PSM 등급 부여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이지만, 크게 바뀌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하청사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청사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원청사의 안전기준을 준수할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작업자에게 적절한 작업복을 지급시켰는지, 전동공구, 용접기, 체인블록, 와이어로프 및 슬링벨트 등은 원청사의 안전 점검 검수를 마친 인증 표시가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당연히 원청사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구 점검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교육 영역에 있어선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입

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청사의 안전 규정과 지침, 절차를 업체에 전달하고, 업체가 이를 실행하고 원청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식입니다. 이후 원청사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를 통해 하청사가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실행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청사 차원에서 내부 안전규정과 절차를 얼마나 잘 준수하는가에 따라 어드벤처지를 부여한다거나,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는 작업자 개인은 물론이고, 하청사 자체에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작업구간에서 생명줄에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고 작업했다가 원청사 안전관리팀 또는 안전감시단에게 걸리게 되면 해당 작업자는 최소 일주일, 최대 영구 출입정지 처분을 받게되고, 업체는 업체대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는 도급계약을 갱신할때 감점요소가 되거나, 개별 공사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발주를 받지 못하게 하는 형식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도급업체 관리 항목에 해당되는 영역과,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비한다면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원청사처럼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대피훈련을 한다거나, 표준안전작업 지침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여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나마 상용직을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지만, 일용직의 경우엔 최소 기준만 실행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플랜트 건설은 고질적인 저가 수주 문제와 재하청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사 수주 시 금액에 비례해 안전보건비용이 정해지지만, 저가수주로 인해 안전보건비용이 바르게 책정되기 어렵게 되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주업체와 외부업체의 간극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상주업체는 공장 내부에서 정보를 일찌감치 수집하기에 외부업체에 비해 저가 수주 리스크가 적다고해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사례와 정부 지침, 유관 법령이 개정 될때마다 안전규정이 수시로 바뀌는데, 원청사에서 통보를 하더라도 적용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하청사들이 수시로 변화하는 안전규정을 따라가기 바쁜 지점도 분명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면 원청사는 그때마다 안전교육을 재 실시하지만, 하청사는 인력이 부족한데다, 플랜트 건설업체처럼 일용직과 단기 계약직 중심이면 안전교육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결국 소위 '가라'라는 속어로 불리는 서명만하고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표준작업절차라거나, 비상시대응체계 등을 작성하지만, 원청사처럼 직원들을 교육시키거나 훈련하는 영역에서 취약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용직 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이런 문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다 산업안전기사 소지자 구인난이 심각한 편입니다.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고용여부를 확인하기에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소지자가 상주하거나 있어야 일감을 주기 때문인데, 일부 석유화학 대기업이 하청사에 안전관리자 고용비용을 지원해주면서 안전관리자 몸값이 올라버

리는 바람에 영세한 업체나, 외부업체들은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소지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현장업무에 바로 투입할 현장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는 더욱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원청사 차원에서 산재를 줄여보기 위해서 산재 발생 하청사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데, 매년마다 업체평가시 사고로 인한 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퇴출되거나, 산재사고 발생시 일정기간 일감을 주지 않고 있다보니 재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의 재해자는 산재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았을까요? 신청은 못하고 공상처리받고 끝났습니다. 당시 재해자는 저였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 하다가 제대로 고정이 안된 그라인더 날에 팔이 베이면서 입은 상처였습니다. 사실 신청하려고 했지만, 안전관리자가 사고나는것도 그렇고, 신청하면 또 원청사에서 알게되겠고, 또 안전관리자가 다쳤으니 이래저래 후폭풍이 심할거 같아 공상처리받고 끝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동영상 보셨을텐데, 제목에서 이미 적었지만, 작년에 발생한 에쓰오일 알킬레이션 2공장 폭발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이 사고로 하청사 직원이 폭발 충격으로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고, 원청사 직원 세명이 전신화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배관에 남아있던 메탄과 LPG가 시운전중에 반응을 일으키면서 폭발한 사고였습니다. 이 당시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안전작업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던 것 역시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석유화학 대공장 역시 산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해 본 바, 이런 지점들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하청구조가 있는 건설업 특성상 재하청업체의 경우 인건비 소모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급하게 일을 진행하여 작업자를 안전사고에 내몰게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하청업체가 안전사고를 저지르면, 원청사 차원에서선 일을 수주한 1차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만, 건설 자체의 뿌리깊은 문제다보니 이런 조치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가수주 경쟁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니 더욱 그렇구요. 물론 법으로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하청 업체'를 쓰는 건 가능하기에 이 점을 악용하는 식으로 재하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플랜트 건설 업체 대다수가 일용직과 계약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감이 많은 시기와 없는 시기가 분명하다보니, 정규직은 최소한으로 둘 뿐입니다. 당연히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어렵고, 일용직 역시 각 공장의 안전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다 일단 이 산업군 자체가 고도의 숙련을 요구합니다. 배관사는 오차 없이 깔끔하게, 화학물질에 맞는 재질을 숙지하면서 배관을 짜야하고, 용접사는 철골구조물을 결함없이 용접 할 수 있어야 하고, 기계정비공은 기계 설비가 바르게 설치됐는지 1/1000, 1/0000 수준으로 정밀 측정을 할 줄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화학물 생산이 메인이니 당연히 위험도가 높고, 작은 실수나 기계의 작은 결함, 작업절차를 조금이라도 바르게 준수하지 않으면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다 아직도 현장에선 빨리빨리 문화, 생산중심 문화가 베여있는 고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에 일을 배운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하청사 가리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다 아직도 일부 대기업은 안전관리 시스템은 정밀하게 구축해놓고도, 이걸 하는 준수하고 추진해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옛날 문화를 고수하다보니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후화 문제입니다. 울산석유화학공단은 우리나라 첫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당연히 설비 노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년 봄가을마다 정기보수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설비를 점검하고, 정비하고, 교체하고, 법 규정에 맞춰 시설을 개조하더라도 본체가 워낙 오래되다보니 설비 노후로 인한 사고 역시 잦은 편입니다. 최근 모 공장에서 설비가 폭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는 설비였는데, 센서가 가스농도를 잘못 측정하면서 폭발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다 플랜트 건설 산업의 주축이었던 숙련노동자들이 고령화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근골격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신세를 지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해왔다보니 규칙적인 보건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와서 그렇지 않을거라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의 안전보건 문제를 다루려다보니, 분량이 좀 많아진거 같습니다.

고 김용균 발전산업 안전강화 대책 후속조치 주요내용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이태성



발전산업 안전강화 정책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

2021. 12. 9.

관계부처 · 민간위원 합동

□ 이행점검회의 구성·운영

'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후, 56개 과제에 대해 각 부처·기관별로 자체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이행점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확인하였다.

'20년 1분기, 2분기 이행점검회의는 정부위원만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20년 3분기 이행점검회의부터는 前 김용균 특조위 위원 중심의 민간위원 5명과 노동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 이행점검회의 운영 경과

이행점검회의 구성 후, '21년 11월까지 약 2년 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의 이행 현황을 꼼꼼하게 챙겨왔다.



주요 개선정책 내용

첫째.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강화	둘째, 노동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발전업을 추가하였고, 안전보건 관련 원·하청 통합협의체를 구축·운영 -산재 예방 및 은폐 방지를 위해 발전사 내부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노동환경 개선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원청의 책임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탄처리 방식 개선, 안전펜스 및 방호울타리 설치, 조명 교체 등 사업장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총 411명의 인력을 증원
셋째. 고용구조의 개선	넷째, 안전 관련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료·환경분야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는 한전-자유총연맹 협상을 적극 독려·지원 중을 통한 정규직화(현재까지 미이행) -경상정비 분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정노무비 직접지급 노무비 착복해소 -계약기간 연장(3년 → 6년+) 등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사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실태를 파악한 뒤, 원청 12명· 하청 23명을 신규로 위촉 -발전소 관리 감독자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유해위험 개선 노력 등 질적 지표를 개발하여 발전사 내부 평가편람에 반영



첫째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강화

5 통합협의체 구성,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완료)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내용

- ❖ **발전소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 대처하도록 발전사·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조직 간 통합협의체 구성**
- 현장순회 점검, 작업환경 관리 및 개선조치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발전사·협력사의 공동안전보건매뉴얼 작성

※ 완료기준: 발전소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및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발전사별 발전사협력사 공동 활용 표준안전보건지침 마련 및 활용

□ 추진실적

- 발전소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발전사·협력사가 공동 대처하도록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 운영
-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석하는 근로자 대표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기 위해 사전 개최안내를 온·오프라인 공고하고 협력사에 공문 송부
- 안전근로협의체를 통해 접수되는 안전·보건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실적과 회의록은 누적 관리하고 회의결과는 게시판 등에 공고(매회별)

구 분	주 기	'20년 개최 횟수	'21.3분기까지 개최 횟수	비 고
안전근로협의체	분기 1회	4회	3회	발전소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 1회	4회	3회	발전소별
안전경영위원회	반기 1회	2회	2회	발전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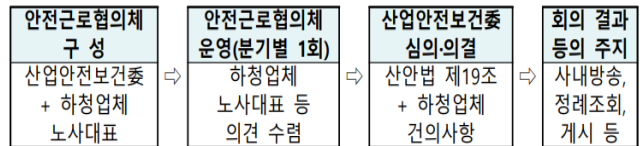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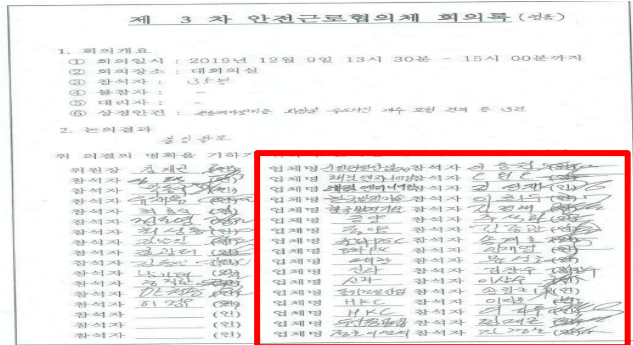
노동조합 참여하여 원하청 논의기구 운영

1. 개요

- 일시/장소 : '21.12.13(월) 13:00~14:20 / 본사 6층 소동마당
- 참석자 : 안전경영위원회 위원 등 15명
- (사부) 경영진 등 5, 근로자 대표 1, 간사 1, (원하청) 경영진 2, 근로자 대표 3 (사외전문가) 3명

【'20년~'21년 상반기 안전경영위원회 결과 홈페이지 게시화면】

구분	서부	중부	남부	남동	동서
'20. 상					
'20. 하					
'21. 상					



둘째 노동조건과 안전보건 체계

22 안전 관련 설비 지속 개선 (원료)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내용

- ❖ 발전사의 안전펜스 및 위험구역 출입경보장치 마련, 조도 개선, 수세 설비 설치 등 안전 관련 설비 개선
- 추가 필요한 안전장치 지속 발굴 조치

※ 완료기준: 이행 계속

□ 추진실적

- 발전소의 안전펜스 및 위험구역 출입경보장치 마련, 조도 개선, 수세 설비 설치 등 안전 관련 설비를 개선 지속 추진

발전산업 안전강화에 따른 설비보강

국무조정실_발전5사 안전투입비용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3년간 투입비용 5조6,484억원

현장 개선사항

구동 풀리 및 컨베이어 주변 안전펜스 설치	안전펜스 설치			낙탄 처리방법 개선	흡입차 운영		
	방호울타리 설치				낙탄회수설비 및 분진박스 설치		
	점검창 개선				수세설비 설치		
작업동선의 조도 개선	조명교체 및 신설						

 7

각종 발암물질 흡입에 대한 건강관리 및 산재시스템 마련

29-3

건강관리카드 교부기준 정비

[완료]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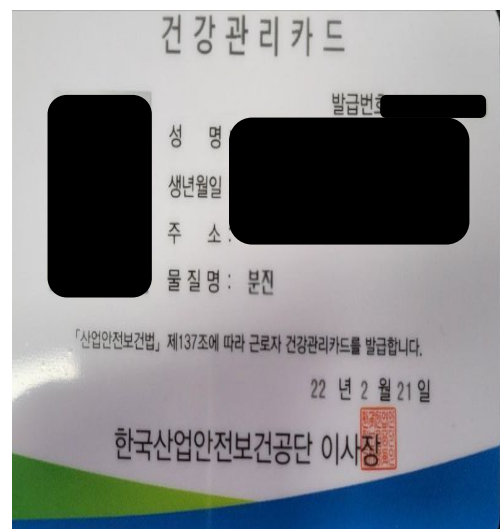
❖ 노동자가 건강관리카드 교부기준 충족시 즉시 교부토록 안내 강화, 유해성 연구용역("20)을 통해 교부기준 등 정비 추진

* ①육내 혼합·분쇄·연마 등 장소 ②3년 이상 종사 ③흉부x-선상 규폐증 인정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1. 11. 19>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구분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대상 요건
7	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集塵), 제처리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너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8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 (2인 1조 인력충원)

2인1조가 아닌 거리상으로 인원설계 문제

○ 컨베이어 PULLEY간 수평거리에 따라 아래기준 적용

컨베이어길이 (Km)	중급숙련기술자 (명/교대조)	초급숙련기술자 (명/교대조)
2미만	1	0
2이상 4미만	2	1
4이상 7미만	3	2
7이상 10미만	4	3

※ 10Km이상 : 매 3Km 증가시마다 중급숙련기술자
· 초급숙련기술자 각 1명씩 증원

19 적정인력 기준 산정연구용역, 인력충원 [완료]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내용

❖ 적정 인력기준 산정 연구용역을 토대로 발전사의 인력충원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완료기준: 적정 인력기준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인력충원 완료

□ 추진실적

○ 적정 인력기준 산정 연구용역 완료('19.11월)

- 적정 인력기준 산정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발전사 및 협력사 노·사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체 운영(4회), 근무현장 실사(11회), 협력사 경영진 면담(5회) 등을 통한 현장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요구 반영 완료



2인 1조로 컨베이어 설비에만 411명 인력충원

○ 용역결과를 토대로 충원목표를 411명으로 설정하고, 411명 충원 완료('20.11월)

구분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합계
충원목표	105	83	69	42	112	411
충원실적	105	83	69	42	112	411

○ 인력 충원을 통해 위험 작업에 대한 2인1조 근무 시행 중



가장 중요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여전하다!

15 발전 협력사 노동자 고용안정성 개선 [진행 중]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내용

- ❖ 2.5. 당정협의 발표 바탕으로, 발전 협력사 노동자 고용개선
 - 연료·환경 설비운전(용역) 및 경상정비(민간위탁) 분야 각각의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에서 세부방안 논의·마련
 - 정부는 협의체가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 신속 추진
- ❖ 경상정비 분야는 협의체 합의 결과의 이행과 함께 위험 최소화, 전문성 강화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21.12. 한전-자총 간 한전산업개발 주식 양수도 협력 MOU 체결
- '22.01. 한전-발전5사 공동'한전산업개발 지분인수·자문 용역 계약체결
- '22.04. 노사전 협의체 제9차 본회의 개최, 정규직 전환방식 합의(안) 수정 의결

- 통합 노사전협의체는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에 따라 공문법상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기준으로 한전산업개발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22.04. 한전, 한전산업개발 주식 인수의향서 제출 (-자총)
- '22.04.~ 한전-자총 간 한전산업 지분매매 협상 진행 중



착복되는 노동자 임금은 받을 수 있었다.

16 발전사-민간정비업체 간 적정노무비 지급사업 [완료]

【'20년 적정노무비 시범사업 노무비 지급·검증 결과】

(단위 : 백만원, %)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내용

- ❖ '20.1.1.부터 2년간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추진
 -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
 -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시범사업 이행상황 확인·점검

※ 완료기준: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완료

□ 추진실적

- 경상정비분야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발전5사-민간협력사간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20.1~21.12월) 협약 체결(19.12월)
- 이후, 적정노무비 시범사업 정상 추진 중(20.1월~)
 -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구분관리 완료 및 시행 중
 - 산출내역을 정상화하고, 발전사에서 협력사로 노무비 5% 추가 지급
 - 회계법인을 통한 지급내역 및 정산결과 확인 중

협력사	발전사-협력사 지급액(A)	협력사-노동자 지급액(B)	차액 (A-B)	비율 (B/A)	검증기관
한국 플랜트서비스	23,737	23,737	0	100.0	현대 회계법인 백한 회계법인
금화PSC	50,599	50,599	0	100.0	더클 회계법인 케이파트너즈세무법인
원프렌트	10,498	10,502	-4	100.0	성운 회계법인
올티멀 에너지서비스	19,082	19,082	0	100.0	현대 회계법인 백한 회계법인
한전 산업개발	37,378	37,378	0	100.0	한울 회계법인
한국 발전기술	8,376	8,883	-507	106.1	현대 회계법인 백한 회계법인
수산 인더스트리	17,371	17,371			신운 회계법인 세무법인
일진파워	32,952	32,952			현대 회계법인 연극스 세무법인
합계	199,993	200,504	-511	100.3	-

대략 2천억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다.

39 발전사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실태 파악·선임 **[완료]** 서부발전 열린 '중대재해 근절 D-100 캠페인'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내용

-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실태 파악, 선임토록 지도
- 당해 사업장 소속 노동자로서, 사업장 자체점검 및 감독관의 감독 시 참여, 법령위반 사항 발견 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등 역할 수행(19.9. 기준 2,729명)

추진실적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실태조사(19.12월)
- **사업장별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 완료(20.2월)**
- * 원청 12명·하청 23명

향후 과제

- 발전사별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 컨설팅 등 지속 지원



하지만 현장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노동감시체계가 시작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QI9kLKEFPGE&t=41s>



사내하청토론회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했던 4건의 사망사고와 노동부 정기·특별안전감독 관련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1,136건에 대한 선고가 2023년 7월 6일 오전 10시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열렸다(재판부 : 제3형사단독, 법관 : 노서영)

- 2019년 9월 20일 LPG탱크 임시경관 가우징작업 중 협착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
- 2020년 2월 22일 LNG선 트러스 조립작업 중 추락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
- 2020년 4월 16일 수중함 발사관 도어 정렬작업 중 협착사고로 정규직 노동자 사망
- 2020년 5월 21일 파이프 용접작업 중 아르곤가스 질식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 등 16명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되어 2021년 9월 27일부터 진행된 공판은 2023년 5월 22일까지 19번의 공판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1심 판결은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묻을 수밖에 없는 매우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판결이었다.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이 기대했던 사법 정의는 없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외침을 재판부는 철저히 묵살했고 오히려 중대재해 책임자 편에 철저하게 일조한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16인의 죄에 대해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과 사업부 대표들이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중대재해 발생 후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조치를 했다는 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다. 중대재해 재발에 대한 가중은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한영석 대표이사 벌금 2천만원, 하수 조선사업부대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박준성 해양플랜트사업부대표 벌금 700만원, 남상훈 특수선사업부 대표 징역 6개월 집

행유에 1년, 이청재 진오기업 대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우영문 디에치마린 대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홍순철 원양대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벌금 5천만원, 원양 주식회사 벌금 700만원, 디에치마린(주)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하였다.

오늘 판결은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 사망한 4명의 노동자와 유족, 그리고 여전히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었다.

오늘 판결은 이 재판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면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 1,136건을 위반하여 기소된 한영석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면해준 판결이었다.

오늘 판결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위험의 외주화, 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해 침묵하고 원청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이었다.

오늘 판결은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며 지난 3년간 재판을 받아온 현장 동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현장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책임은 면해준 판결이었다.

오늘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안전 사회를 염원하며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근절 염원을 담은 울산시민과 노동자 9,542명의 탄원을 묵살하는 판결이었다.

오늘 재판을 방청한 노동자와 울산시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깊은 한숨과 절망,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1심 판결 결과

피고인	직책/ 사고	죄명	범죄 전력	검사구형	1심 판결
한영석	대표이사 - 1,13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안법위반 3회	3천5백만원	벌금 2천만원
하수	조선사업부대표(19년-2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1회	징역 2년	징역8개월/집유2년
박준성	해양플랜트사업부 대표(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벌금 700만원
남상훈	특수선사업부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징역6개월/집유1년
문**	가우징작업 해양플랜트 안전팀장중 끼임	업무상과실치사		700만원	벌금 400만원
홍순철	원양 대표(가우징 끼임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징역10개월/집유2년
전**	원양 현장소장(가우징 끼임사고)	업무상과실치사		700만원	벌금 500만원
김**	LNG 공사부 공사7과장(트러스 사고)	업무상과실치사		700만원	벌금 500만원
이청재	진오기업 대표(트러스 추락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징역8개월/집유2년
전**	진오기업 현장소장(트러스 사고)	업무상과실치사		700만원	벌금 500만원
홍**	특수선사업부 생산부장(특수선 사고)	업무상과실치사		700만원	벌금 500만원
노**	현장 동료(특수선 사고)	업무상과실치사		300만원	벌금 300만원
우영문	디에치마린 대표(아르곤 질식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징역8개월/집유2년
현대중공업(주)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천만원	벌금 5천만원
원양(주)	법인 - 가우징 작업 중 끼임 사고(1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천만원	벌금 700만원
디에이치마린(주)	법인- 아르곤 질식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천만원	벌금 700만원

2020년 2월 22일 LNG선 트러스 조립작업 중 추락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

1. 고발 요지

고발인 조○○은 피고발인 현대중공업법인 외 2인을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위반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위반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위반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위반

▶ 사고작업장 위치 및 위반내용

- 사고장소 : 현대중공업 2야드 8도크 동편 PE장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피고발인 현대중공업법인 외 2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이 있는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 보건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시켰습니다.

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재해자의 작업반경 내에는 안전대를 걸수 있는 부착설비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니다.

6)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에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바람이 강한 날씨에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7)이와 같이 현대중공업법인 외 2인은 법에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8)이는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반하고 국가와 회사의 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위법행위입니다.

9)만약 피고발인 현재중공업법인 외 2인이 법적의무 위반의 책임을 작업자에게 돌리거나 법률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방지업무 등)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바.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현대중공업법인 외 2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귀 기관에 고발 조치하오니

사고위치 및 공정 설명



※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의거 대리인이 아닌 법 위반 당사자인 피고발인 현대중공업법인 외 2인 모두 직접 참석시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약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은 부검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검 영장을 발부 받아서 영장을 집행 위하여 형사 들이 재해자 시신을 인도 받으러 왔다. 추락사가 분명한데 부검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재해자의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 하였고 현대중공업 원. 하청 노동조합과 울산민주노총 노안보위 상근간부 등이 함께 2차에 걸쳐서 부검을 막아내었다.

부검의 의도가 분명히 사측의 책임 회피용 이었으며 한영석 대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하수 조선사업부 대표

피고인	직책/ 사고	죄명	범죄 전력	검사구형	1심 판결
한영석	대표이사 - 1,13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안법위반 3회	3천5백만원	벌금 2천만원
하수	조선사업부대표(19년-2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1회	징역 2년	징역8개월/집유2년
이청재	진오기업 대표(트러스 추락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징역8개월/집유2년
전**	진오기업 현장소장(트러스 사고)	업무상과실치사		700만원	벌금 500만원

2019년 9월 20일 단고테 중대재해

피고발인

- 1)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법인(회사 202-2129)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 2) 성명 :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회사 202-2003)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 3) 성명 : 박준성 해양플랜트사업부 대표(회사 202-2094)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 4) 성명 : 홍순철 (주)원양 대표(회사 202-4865)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2. 고발 요지

고발인 조성익은 피고발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법인 외 3인을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마. 고발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사고 일시 : 2019년 9월 20일 11시 13분경

- 사고 장소 : 해양플랜트 판넬공장 서편 PE장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피고발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법인 외 3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체, 중량물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부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는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는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는 ‘사업주는 중량물취급 작업 시 38조 11항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 그러나 이번 사고는 테스트 캡(무게 18톤)해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전도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출한 표준작업지도서 자료를 보면 18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작업방법이 아님에도 잘못된 작업방법을 제시하였고, 표준작업지도서의 순서조차 절차대로 작업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대중공업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중대재해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 이는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국가와 회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노동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법인 외 3인이 법적의무 위반의 책임을 작업자에게 돌리거나 법률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방지업무 등)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아.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법인 외 3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귀 기관에 고발 조치하오니 철저히 조사하고 엄하게 처벌하여 유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해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헌법 제 35조)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타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다면 진술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보충하겠습니다.

※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의거 대리인이 아닌 법 위반 당사자인 피고발인 한영석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직접 참석시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표준작업지도서 1부

2019년 9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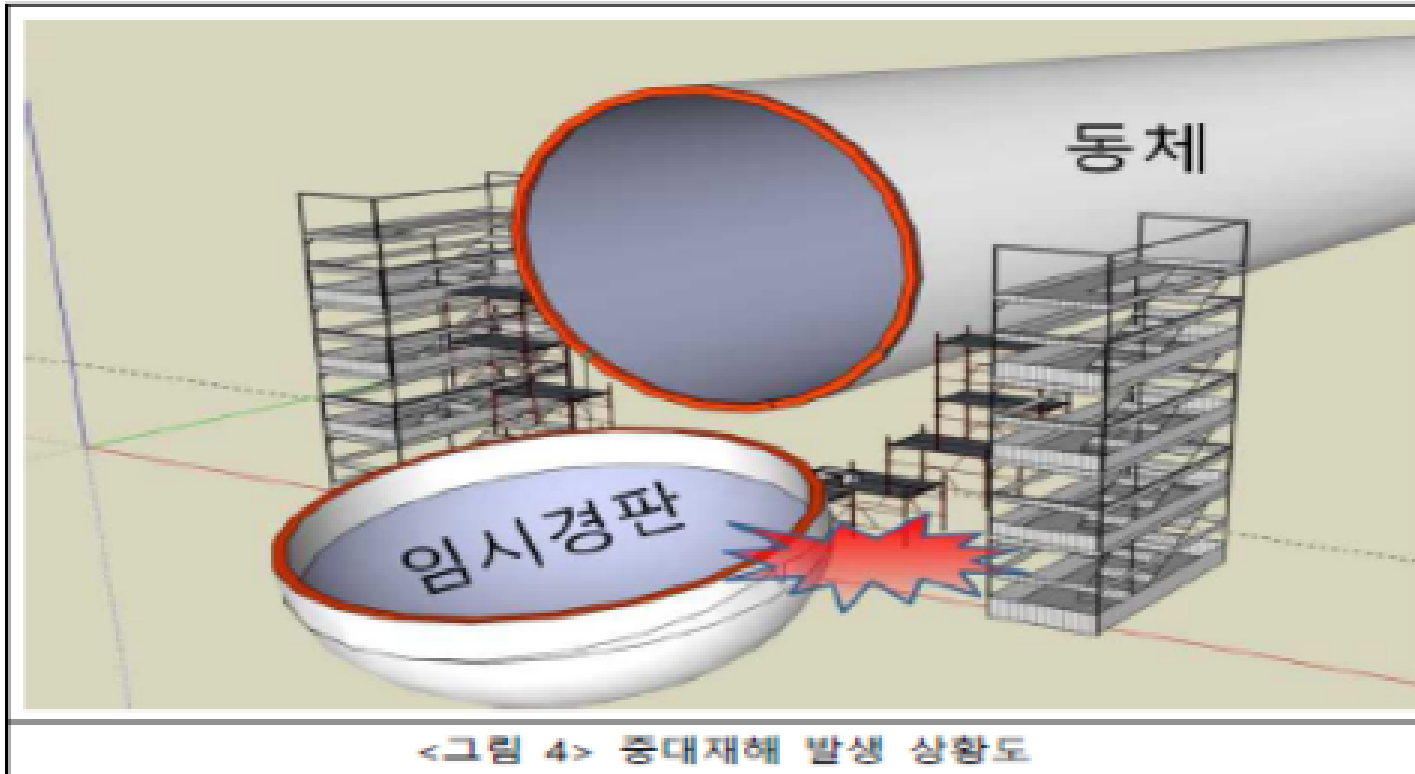
위 고발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안전보건실장 조성익 (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귀하

1. 사고 개요

재해발생일	2019년 9월 20일 오전 11시 13분		
재해자 이름	박**	나이	60세(1958년생)
원청/하청	하청	업체명	원양플랜트현장
입사일자	2003.09.03	동종경력	25년
고용형태	정규직	가족관계	처, 아들2 (87년생,93년생)
재해정도	사망	사고규모	사망 1
재해유형	깔림	상해종류	머리 등 골절
작업중지 일수		작업중지범위	중대재해 발생구역 (재해 발생 프로젝트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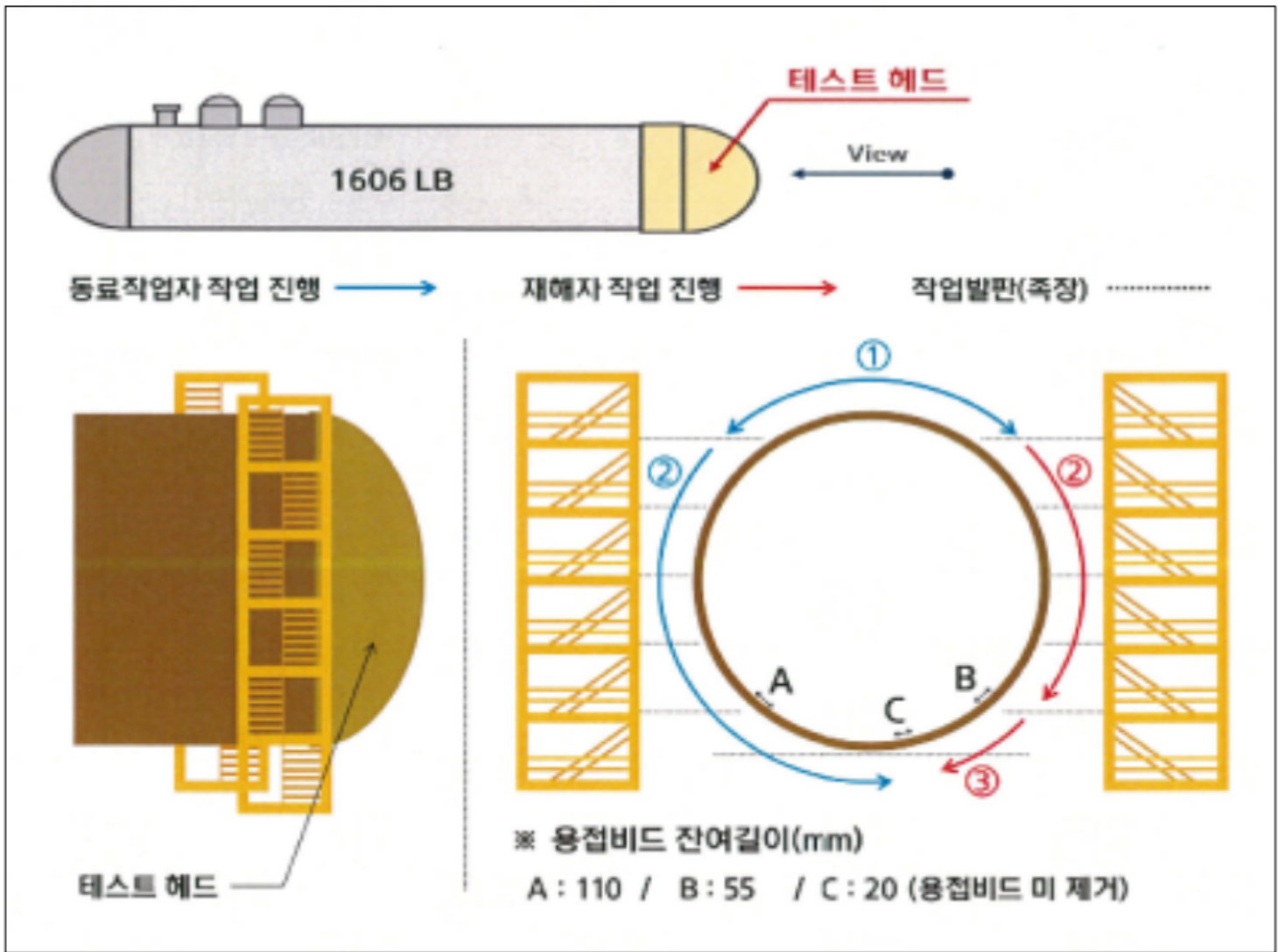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재해조사 의견서 7페이지]

1. 사고 내용

1) 재해발생과정

2019. 9. 20. (금) 해양 판넬 공장 서편 PE장에서 단고테프로젝트 중 LPG저장탱크의 기압 시험 후 시험용 경판(18톤)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에 재해자 외 1인이 투입되어 재해자와 동료 노동자가 시험용 경판의 상부에서부터 좌우로 나눠 용접부를 제거하며 내려오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시험용 경판(약18톤)이 그 무게로 인해 본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재해자의 목이 시험용 경판과 본체 사이에 깔려서 재해자가 사망한 사고이다.



[한국안전환경과학원 안전진단보고서(현대중공업) 31페이지]



기압헤드에 크레인을 체결해 지지할 고리가 있지만 당일 작업에 크레인을 투입하지 않음.

꺾임, 낙하 방지를 위한 하부 받침대 미설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해양 플랜트(주)원양 중대재해 보고서 3페이지 캡처]

피고인	직책/ 사고	죄명	범죄 전력	검사구형	1심 판결
한영석	대표이사 - 1,13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안범위반 3회	3천5백만원	벌금 2천만원
박준성	해양플랜트사업부 대표(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벌금 700만원
문**	가우징작업 해양플랜트 안전팀장중 끼임	업무상과실치사		700만원	벌금 400만원
홍순철	원양 대표(가우징 끼임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징역10개월/집 유2년
전**	원양 현장소장(가우징 끼임사고)	업무상과실치사		700만원	벌금 500만원

한영석대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해양 플랜트 사업부대표 벌금 700만원으로 원청 현대중공업에 솜방망이 처벌 면죄부를 주었다. 하청업체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 하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또한 유사한 작업장 전면 작업중지가 아니라 사고 해당구역 부분 작업중지를 하였지만 작업중지 해제가 최우선 과제가 된 듯한 행보였다.

언론들 또한 작업 중지에 따른 손실을 다루었다.

1. 사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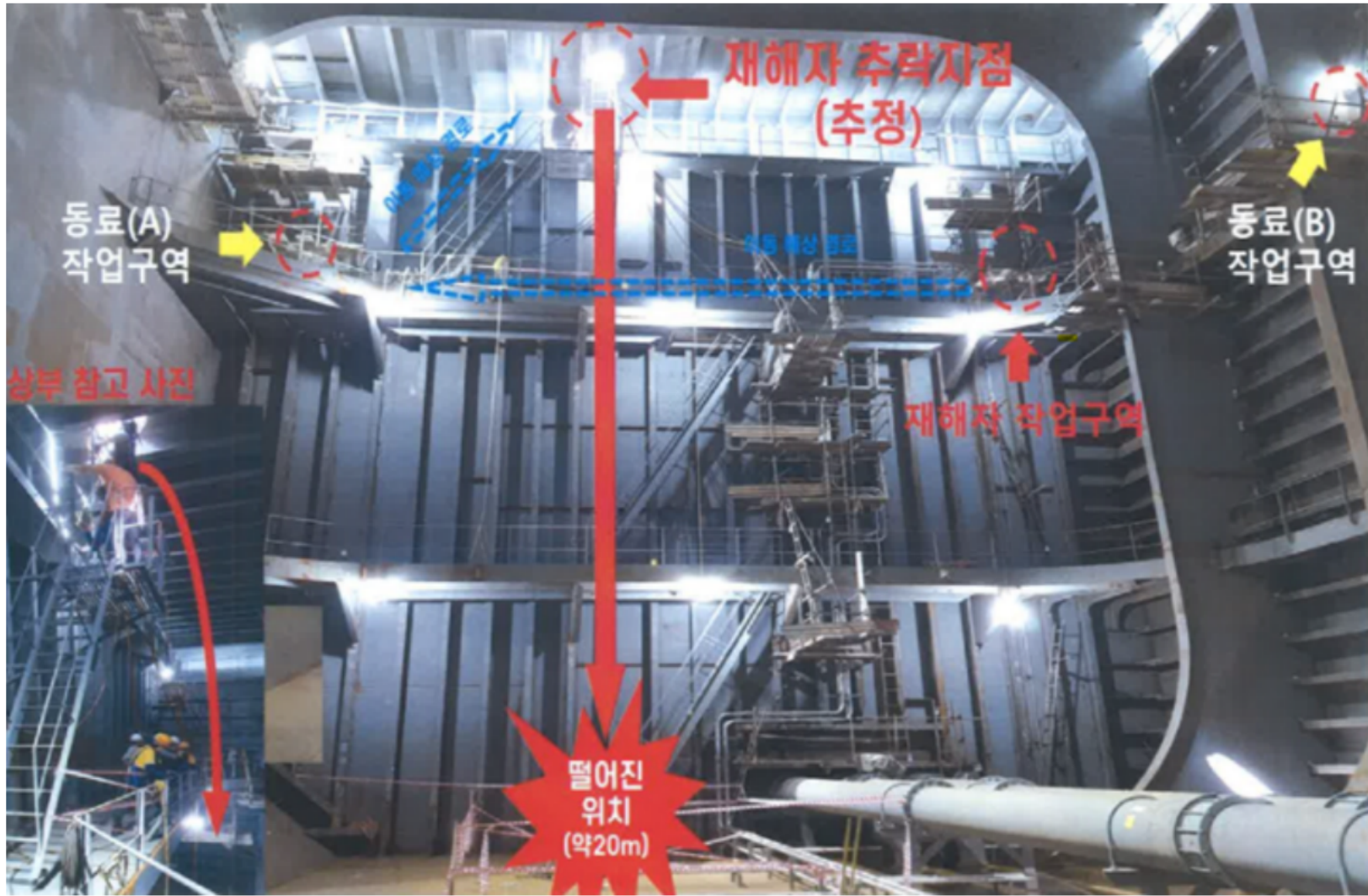
재해발생일	21년 5월 8일 08:40		
재해자 이름	장**	나이	
원정/하정	하정	업체명	가온기업
입사일자	2021.2.26.	동종경력	
고용형태		가족관계	아내와 자녀 1명
재해정도	사망	사고규모	사망1
재해유형	떨어짐	상해종류	
작업중지 일수	작업중지 (일자 미상)	작업중지범위	부분 작업중지 (범 위 미상)

2. 사고 내용

1) 재해발생과정

9도크(조선 2야드)에서 건조 중이던 원유 운반선 3번 COT(Crude Oil Tank) 탱크 상부에서 작업중 건조3부 소속(가온기업/단기 공사업체)소속 장세준(81년생) 노동자가 20M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피재자는 동료 2명과 함께 용접작업 지시를 받고 작업장 내부에서 이동 중 탱크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탱크내 작업구역(stringer)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재자의 작업은 아전난간에서 안쪽으로 약 2 m 이상 떨어진 블록 연결부 용접작업이었다.

2) 공정설명 / 그림 및 사진



<사고설명사진>

안전보건조치 미실시 문제

1) 상부홀 개구부통로 일자 계단(사다리식 이동통로)에 따른 추락위험 상존



- 사다리식 이동통로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나 미설치되어 있음.
- 사다리식 이동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하나 미설치 되어 있음.(사진 속 이동통로가 7m 이상은 아니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 되는 고소작업공간에서 윗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이므로 균형을 잃어 넘어질 위험 등이 존재하므로 등받이 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2) 현장설치 난간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이 아닌 선박설계상 이동통로 난간



- 난간대 자체가 얇은 형태로 되어 있어 난간대에 추락방지용 매쉬를 설치하거나 안전을 위한 추가 난간을 설치하던가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함.
- 안전난간의 기준은 90cm 이지만 노동자 신체특성을 고려해 법적 기준이상의 높이(예를 들어 120cm로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를 2단으로 설치하는 등)로 설치가 필요함
- 법적으로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작업 시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8) 안전화, 안전장구 지급 미흡



재해자 신발 밑창이 닳아 있어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1년에 두 번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작년 12월에 지급한 안전화로 판단됨. 하루에 마스크도 한 개씩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 소모성 장갑, 마스크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단기계약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보호구의 지급문제를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함.



2. 구조적 문제

- 이번 공사 같은 경우 건조3부 부서장이 단기로 가온기업 같은 곳에 50인 이하로 계약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 이것은 1차 하청업체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 발생되고 안전을 무시한 사고다발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기본적인 작업 지시서나 표준작업지도서 등 기본적인 것도 위반하고 있음)
- 화기감시자가 업체별로 배치되어 있는지, 홀더별(구역별)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화기감시자에게 화기 감시 외에 청소 등의 작업을 시키는 것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음.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문제 개선 필요
- 하청 물량팀은 몇 명이 일하는지 알 수 없는 유령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안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단기 물량팀의 정확한 현황을 사업주에게 제출받고 단기업체 등의 구조를 없애야 함. 원청에 물량팀, 단

기업체 계약 금지 요구가 필요함. 노동부에 도급계약금지 관련 산보위와 노동부를 통해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조치되지 않음. 이번에도 유사하게 단기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조치 미비로 중대재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함.

- 현대중공업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청, 재하청을 넘어 2~3달 단기계약 등으로 물량팀을 생산에 투입하며 안전조치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현대중공업 내 비슷한 고소작업과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정에서 끊임없이 사고와 중대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나 현대중공업은 동일한 사고원인의 작업들에 대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스템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물량팀 계약 등으로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음.

이사고 또한 산안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하였지만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현대중공업 원 하청 사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1. 사고 개요

재해발생일	14년 4월 26일 11시 35분경		
재해자 이름	정**	나이	44세
원청/하청	하청	업체명	서문기업
입사일자		동종경력	
고용형태		가족관계	
재해정도	사망	사고규모	사망1
재해유형	부딪힘 및 추락 후 질식	상해종류	목뼈 골절
작업중지 일수		작업중지범위	

2. 사고 내용

1) 재해발생과정

노동조합의 ‘중대재해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4월 26일 11시 35분경, 선행도장부 13번 쉘장(H2626호선 S22(S) 블록)에서 블라스팅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높이 4미터 핸드레일에 송기마스크 에어공급용 호스에 목이 감긴 상태에서 발견되어 에어호스를 끊고 내려서 인공호흡을 했으나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 블록 블라스팅 작업은 총 9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재해자의 송기

마스크는 사고 난 장소 반대편에 놓여있었고 재해자는 함께 일하던 윤찬호씨가 사용하고 있는 송기호스에 목이 감긴 채 발견되었다.

동료 작업자 윤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송기마스크에 에어공급이 되지 않아 나가보니 재해자가 목이 감긴 채 지상으로부터 약 50cm 정도 떠서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쪽 칸에서 일하고 있던 반장 박호명을 불렀다. 윤모씨는 재해자를 들어 올리고 반장인 박모씨가 호스를 칼로 끊은 뒤 내려서 응급조치를 취한 뒤 병원에 후송했다고 한다.

2) 공정설명 / 그림 및 사진



사고현장(울산저널 2014.04.28.)

3. 사고 원인

노조의 사고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재해자는 블라스팅용 리모콘이 작동이 적절히 되지 않아 이를 점검하던 과정에 블라스팅 그리트가 발사되었고 이에 맞아 추락하면서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된다.

4. 응급 조치 및 대응 상의 문제점

유족과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등은 자살이 아닌 산업재해 즉 중대재해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경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은 사고발생 5년만인 2019년 9월에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경찰은 재해자의 작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가운데 단순히 사망한 상태만을 보고 자살로 추정하였고 울산 MBC에 여과 없이 ‘자살’이라고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있는 “변사자와 유족 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다. 사업장 내에서의 변사 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가장 먼저 조사하는 당국인데 사업장과 업무

에 대한 이해가 없으므로 특히 초기 수사결과를 ‘자살’로 추정할 경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의할 것을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명시하거나 혹은 고용노동부와 MOU 등의 제도를 만들어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재해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고는 2014년 4월 26일 11시 35분경 이었고 현대중공업 사업장재에서는 자살 일수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검안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는 가정불화에 이은 자살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자살로 몰아간 울산동부경찰서 유족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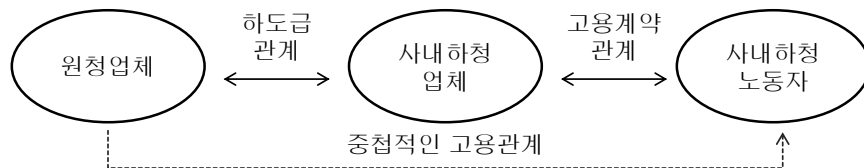
사고발생 5년 만에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보고의 의무 공소시효 3년이 지나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제조업 원하청 구조와 산업안전 특성

박종식 / 한국노동연구원

원하청관계와 사내하청

- ▶ 사내하청 :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하청업체를 통하여 생산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방식
: '경제적 거래(하도급 관계)' 와 '고용관계' 와 중첩화된 모순적 고용관계



- ▶ 자본주의 이전 선대제 (putting out) 생산방식의 현대적인 재현? (노동의 간접활용->동질화->분절화)
 - ▶ 이와 같은 사내하도급 방식이 오늘날 재등장하게 된 배경은?(공장의 탄생과 통제기술의 발전)
 - ▶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업무/공정의 분사화가 추진 -> 노동시장 측면에서 용역/도급업체 노동자('소속외 근로') 증가
 - ▶ 이후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 : 간접고용(한국)/alternative employment(미 BIS)/'multi-party employment'(ILO)
 - ▶ 실제 사용자는 누구인가?(who's the boss?) 특히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누가?
- ⇒ 사내하청의 '사회적 실체' 는 모호한 상태로 앞으로도 연구대상

산업재해의 사회화

- ▶ 1964년 <산재보험제도> 시행과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 산업재해의 ‘보상’과 ‘예방’의 형식적 틀 완성. (다만) ‘단층적인’ 고용관계를 전제
- ▶ 고용형태의 다양화,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중층적인 고용의 확산
 - : 재해율 감소 but 안전보건수준이 향상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ex. 사망재해의 하청화)
- ▶ 산업재해 문제는 지금까지 산업공학(안전), 의학/간호학(보건)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고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지금도 지속. 상당한 성과를 도출!
- ▶ 기존 비정규직/사내하도급 노동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재해위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 다만 최근 한국에서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증가
- ▶ How **new work arrangements** affect the health of the flexible workforce?(Benach & Muntaner, 2007)
 - ⇒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접근 필요성(cf. 물리적, 사회심리적 원인)
 - ⇒ 즉, 사내하도급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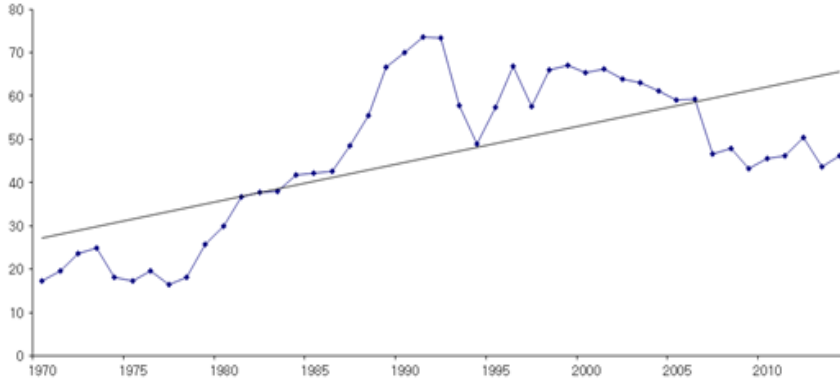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 ▶ 국가주도 산업화에서 기업주도 산업화로
 - 특히 1996년 OECD가입과 1997년 말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한국사회의 질적인 변화 : 기업의 발언력과 영향력 강화
 - 재벌주도의 원하청 관계의 확산
 - 노동조합운동의 확산과 노동시장 유연화



하청계열화를 통한 동원 전략

- ▶ 수평적 네트워크보다는 수직적 원하청 관계를 통한 자원동원 성장전략
- ▶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의 중소기업 중에서 위수탁기업(소위 하청업체)의 비중이 50%를 넘어 1990년대 중반에는 70%를 상회
- ▶ 이제는 '(하)도급' 자체가 이제는 산재발생의 원인들 중의 하나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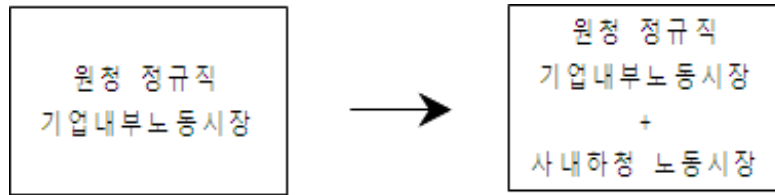


한국 중소기업의 수위탁기업(하청업체) 비중과 추세

사내하청 확산 원인에 대한 설명

-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사내하청 확산에 대한 기존 설명
- 현상적(?): 원청의 자본축적 전략, 경영합리화/인사관리 전략, 시스템 합리화 전략, 노동조합 통제 전략 등
- 이론적: 내부/분절노동시장론, 하도급이론, 네트워크 이론, 노사관계 이론 등
- 기존 설명의 한계
 - 1) 기업의 '유연화 추구' 설명은 동어반복('하청'에 유연성 개념이 내포)
 - 2) 자본의 의도로만 설명
 - 3) 내부노동시장과 사내하청의 '접합'을 간과한 설명: 사내하청을 부수적 존재('외부자')로 파악 (Altauser의 내부노동시장론에서 기업간 관계 포함 필요성)
- 1990년대 초 기업내부노동시장 형성 이후 노동조합이 행위주체로 등장: 원청 노사의 전략과 대응을 검토할 필요성
- 특히 1990년대 이후 재등장한 사내하청은 자본의 의도로만 설명하기 힘든 한계
- 제도적 관점에서 두 행위자(노-사)간의 전략적 선택으로서 단체협상/일상적 협의의 제도화 및 내부노동시장의 영향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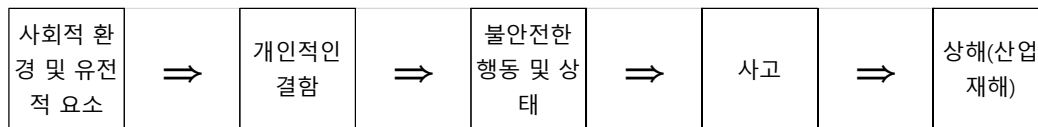
조선업 기업내부노동시장 구조변화



- 사내하청은 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 **분절(segmentation)**되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일련의 노동과정에서는 **접합(articulation)**된 모순적인 상태
- '사내하청에 기반을 둔 생산시스템',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
- 자본주의 발전 초기의 선대제 방식의 하청생산 및 건설업의 (사내)하청 노동의 활용과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차이
- 한국에서 노동자대투쟁 이후 대거 사라졌던 과거 사내하청과 차이 (동료의식 강함, 차별 없음 Vs 동료의식 약함, 격차 존재)
- ✓ 원하청 노동자간의 계급균열(조돈문, 2009)
- ✓ 원청은 추상적이고 실리주의적 수준에서의 연대의식(박종식, 엄재연, 2010)

산업재해에 대한 기존 설명

- 초기 : 재해경향성론 - 사고를 잘 내는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말라 : 썩은사과이론. 노동자책임론
- **신고전파 경제학**은 산업재해 방지의 사회적 한계비용과 그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산업재해 방지 수준이 결정. **맑스주의**에서는 자본의 이윤증대 목적 하에서 산재 발생(Navarro) : 일원론적인 설명들
- 도미노이론(Heinrich, 1931) : 5단계 요소 중에서 한 가지 요소라도 제거가 되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동자들의 불안정한(잘못된) 행동 뿐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작업장 환경)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초기의 설명에서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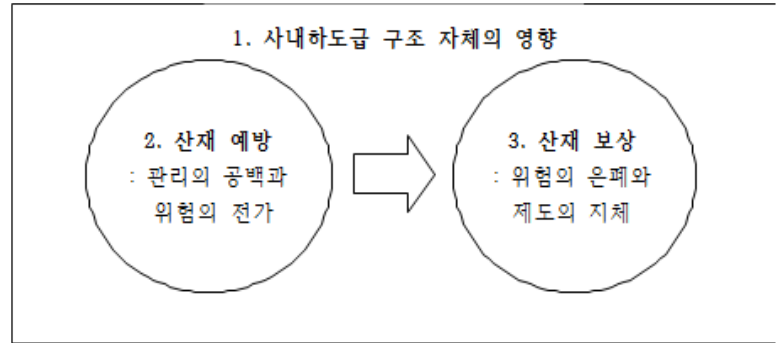


- 도미노이론 이후 점차 다인론(multiple factor theory)과 종합적 접근을 강조.
- 60년대 systematic 위험 분석, 90년대 스위스치즈 모델, 시스템 안전, 2010년대 resilience eng.
-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물리적 환경 인자-> 사회심리적 인자-> 사회구조적 인자(이경용, 1990). 현재는 2단계 수준으로, 산업재해 분석이 점차 확장될 필요.

사내하청과 산업안전문제의 유형화

• 사내하도급으로 위험이 전가될 개연성과 산업안전관련 문제점

1. 사내하도급 구조 자체가 원인으로 작동하는 사례들
2. 예방적인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공백으로 인해 재해위험이 전이되고, 원하도급 관계로 인해 초래되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 사례들,
3. 보상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통한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하도급 관계를 매개로 한 배제의 사례들



[표 2] 산재안전망의 다차원적 개념구조

속성	사전 예방			사후 보상		
하위 속성	1)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 시스템의 수립	2) 감독 및 제재	3) 교육 및 훈련, 정보의 제공 (고지)	1) 요양지원 (치료 및 간병 등)	2) 소득보장	3) 재활 및 복귀 지원

Cf) 박고은(2020)의 '산재안전망' : 사전예방적 산재안전망 + 사후보상적 산재안전망

1. 사내하도급 구조 자체가 산재원인으로 작용

1) 원청의 공기단축 요구와 설비투자가 불가능한 하도급업체

“공기를 맞춰줘야 기성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짧은 시간에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자주 발생”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거의 할당할 수 없으니까,.. 고소차, 크레인, 작업대, 사다리 등 필요한 장비나 설비가 있어야 하는데 미흡”

2)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과 열악한 처우

“업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곳에 오래 일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새로운 작업환경에 적응하는데 좀 문제가 있구요. 물량팀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만 와서 일하고 가다 보니까 정식으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기도 힘들고...”

2. 산재 예방 측면 : 관리의 공백과 위험의 전가

1) 원청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배제

“우리 같이 작은 회사에서 힘들고 위험한 공정을 맡아서 하는 경우에는... 몇 시간씩 (안전)교육할 시간도 안 되고... 공간도 안 되고... 할 사람도 안 되고... 서류상으로는 다 만들어 놓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사내하청업체도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 안 합니다.”

2) 위험-기피 공정의 사내하청화

“직영들이 도장이나 후행공정같이 힘든 일에 대해서는 꺼리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작업은 웬만하면 외주화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3) 사내하청 관리체계의 공백 : 조선업 재하청(물량팀) 문제

4) 이원화로 인한 소통 공백 : 원-하도급 및 하청업체 간

➢ 밀폐공정 용접으로 인한 폭발 사고,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3. 산재 보상 측면 : 산재 은폐와 지체된 제도

1) 산재은폐 및 공상처리 강요

“산재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문제 때문에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업체 재계약할 때 산재관리 잘하고 있는지가 점수로 반영”

“치료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거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산재처리를 합니다. 근데 단순 찰과상 같으면 며칠 쉬면 나오니까... 그러면 굳이 산재안 하고 병원비/약값 받고 그냥 일합니다”

2) 산재보험 적용 불이익과 질병재해 불인정(근속 문제)

“내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 해주면 노동부에 가서 얘기해야 하는데... 노동부에 얘기하면 그러면 내 이름이 원청 리스트에 떠버리는 거라. 그러면 나는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안 죽고 증상 정도 있죠? 그러면은 (원청) 안전과의 누가 볼까 싶어가 일단 뭐로 (다친 사람을) 덮습니다. 그러고서는 앰블런스 안 불러예. (하도급)업체 포터(소형트럭)에 실어서 가뺍니다(공장 밖으로 나갑니다)”